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허경미* · 박영주**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
| II.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 논의 | V. 결 론 |
| III.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 |

〈요 약〉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지역·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의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강사

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 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민간경비, 일반경비원, 경비업법, 경비원교육, 전문교육기관

I. 서 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공권력만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사회가 변화·발전할수록 전통적 범죄뿐 만이 아닌 다양한 신종범죄가 등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범죄예방활동의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주거지역에 CCTV 카메라 등의 민간경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범죄 및 범죄두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 만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모스크바 시에 700개의 안전확보지역을 지정하여 민간경비회사들의 치안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¹⁾.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의 민간경비 산업을 비교해 볼 때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비업체는 2,515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경비원수는 122,327명으로 이 수치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31% 증가한 것이며, 경비원수는 1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양적으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해서 민간경비가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 수의 증가와 경비원 수의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기관내부의 제도나 체계 그리고 경비원의 자질이라는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2003년 호송 경비업체의 차량탈취사건³⁾ 및 2006년 3월에 발생한 롯데월드 무료개장행사시의 부상사고⁴⁾, 상주 MBC가요콘서트참사사건⁵⁾ 등은 경찰 및 경호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사상이 더 심각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경비업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pds/globalpoliceView.do?idx=23975&cPage=23> (외국경찰 동향), 2006년 12월 15일 검색.

2)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실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2_07.jsp, 2006년 12월 15일 검색.

3) 조선일보, 2003-10-23 42판. 사회 08면

4) 서울신문, 2006-03-27 20판. 사회 06면

5) 연합뉴스, 2005-10-2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0/200510200232.html>)

이렇듯 변화하는 민간경비 환경과 더불어 더욱 수준 높아진 고객의 민간경비 서비스에 부응하고, 민간경비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경비 근무자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그 초석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비원 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다.

경비원 교육훈련은 2006년 2월 경비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거에 비해 교육 훈련조항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간 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현행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향후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교육훈련의 개념 및 필요성

인적자원의 지적·도덕적·정서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기를 원하고 시간, 정력,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으로 인하여 고양된 정신상태는 조직에 부여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내심과 성실성의 고취로 맡은 업무에 대한 용기를 배양하는 기초가 된다(김순열, 2001, pp. 100-101).

경비원의 능력을 충분히 살려 경비업의 성과에 반영되도록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를 만들고 개인의 경력관리를 실시하며 업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방향은 기업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기능의 향상과 인사 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일원인 동시에 사회 구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케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은 형식적이고 단기적이며 모방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기능의 하나로서 의식적, 계획적, 계속적으로 기업의 체질에 알맞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의의가 있다(권태일, 2004, pp. 15-16).

따라서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이란 민간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이며, 계획적, 계속적인 기능인 것이다

(최웅렬, 2006, pp. 11-12).

교육훈련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첫째, 교육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덜 받은 사람보다도 업무수행능력이 높다. 둘째, 많은 교육훈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방식 등을 쉽게 수용토록 한다. 셋째, 많은 교육훈련은 보다 좋은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와 보다 좋은 직업선택을 의미한다. 넷째, 산업화에 이어 자동화된 사회는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구조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윤종일 외, 1996, p. 401). 특히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고객인 수요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이 수요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순열, 2001, p. 101).

2. 교육훈련의 방법 및 체계

교육훈련의 방법은 직장훈련, 직장 외 교육, 자기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권태일, 2004, pp. 16-23). 직장훈련이란 직무상 훈련이라고도 하며 교육훈련의 담당자는 직무상의 상위자가 주축이 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즉 직장에서 구체적인 직무에 임하여 직속상사가 부하에게 직접적으로 개별 업무지도를 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직장 외 교육이란 스텝 중심의 훈련으로 직장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스텝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 내에 있는 연수원과 같은 특정의 교육훈련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강습회나 강연회를 개최 혹은 기업 외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의 신임훈련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개발은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으나 평상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기업교육의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개발은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이해와 평가에 의해서 성장, 향상의 욕구를 갖고 이에 대해 자주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원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훈련은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운영전략이나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교육훈련의 대상이 될 경비원의 능력과 수준을 파악함은 물론 경비원의 욕구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교육의 주축인 피교육자와 교육자, 교육기법 및 프로그램, 교육시기, 교육장소의 문제로서 교육기자재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학습이론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주요국의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실태

1)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된 미국은 정부기관, 금융, 산업시설,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만, 교량 등 중요시설 및 핵운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전문경비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경비원의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중요시하여 왔다. 즉 미국 각 주의 입법기관들은 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경비자문위원회는 경비업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민간경비관련 근무자는 최소한 120시간의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육자료확보방법론 등 민간경비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권태일, 2004, pp. 32-33).

미국에서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입문단계 코스는 비무장 민간경비 근무자 코스이며 이 코스를 이수하고 현업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는 자기 능력발전과 경력발전을 위해서 분야별 훈련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미국은 기본적인 입문단계코스로 비무장 민간경비근무자코스를 16시간 이수해야 하며 훈련내용으로는 회사방침, 회사와 시큐리티 부서의 정책, 조직, 절차 및 각부서의 운영과 활동, 법규와 그 배경, 보고서작성, 징계, 일반적규정, 특수규정, 응급처치, 자기방어, 통행 및 신원확인 시스템, 물품과 차량수색기법, 통신전자, 관찰기법, 장비운용, 순찰기법, 직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전문적 표준(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분야별 교육이 별도로 실시된다.

즉 <표 2-1>의 교육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경비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내용은 비무장 민간경비근무자코스를 통해 교육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이 별도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총기휴대경비원의 경우에는 실내훈련과 실외훈련으로 시행된다. 실내훈련은 법률적인 부분과 총기관련내용 및 문서작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훈련은 일반적인 사격술을 연습한 후 상황에 맞춘 사격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표 2-1〉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무장 민간경비근무자 코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방침, 회사와 시큐리티 부서의 정책, 조직, 절차 및 각부서의 운영과 활동 · 법규와 그 배경, 보고서작성, 정계, 일반적규정, 특수규정, 응급처치, 자기 방어 · 통행 및 신원확인 시스템, 물품과 차량수색기법, 통신전자, 관찰기법, 장비운용, 순찰기법, 직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전문적 표준(윤리)
총기휴대경비원	24	<p>실내훈련: 법적 제한(3시간)-민간경비원의 무기소지 및 체포권리, 관련법;총기관리(2시간)-총기작동법,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 총기관리규칙, 총기청소 및 관리;문서작성(1시간)</p> <p>실외훈련: 사격술(2시간); single action코스(8시간)-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25yard거리에서 30발의 탄환중 적어도 18발을 맞추어야 함; double action코스(8시간)-거리는 같으나 훈련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72발의 시도 중 43발을 맞추어야 함.</p>
무장호송경비원	20	
경비견 훈련	28	
신변보호 전문가	60	
경보응답	16	
상황실 운영요원	8	
기계경비 전문가	14	
기계경비전문보조요원	4	

주 :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2003), 내부자료, Robert D. McCrie(2001)p. 105, 이상원, 2005, pp. 99-100, 재구성.

2) 일본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경비업법 제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원교육은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받는 신임교육과 경비업무에 종사 중인 경비원에게 실시되는 재직자교육으로 구분된다. 기본교육의 경우에는 신임자는 15시간, 재직자는 6개월마다 3시간씩 받아야 하며, 업무별 교육은 신임자는 15시간 재직자는 6개월마다 5시간씩 받도록 요구한다(권태일, 2004, pp. 39-41). 결국 신규임용자가 받는 교육은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총 30시간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내용구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일본의 민간경비원 교육내용

구분	업종	교육내용
기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용역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시에 있어서의 경찰기관에의 연락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호신용구의 취급에 관한 사항
업무별 교육	상주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무대상 시설에 있어서의 사람 또는 차량 등의 출입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순회방법에 관한 사항 · 경보장치 기타 기기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지시기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 및 혼잡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 방법에 관한 사항 · 사람 또는 차량이 혼잡한 장소에 있어서의 소란행위의 제지에 관한 사항 · 각종 기자재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귀중품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차량 등에 의한 동반주행 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할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을 적재할 때의 경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 중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신변에 있어서의 경계에 관한 경계위치 및 경계방법에 관한 사항 · 각종 기자재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불심자를 발견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신체에 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피난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기계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기능에 관한 사항 ·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에 의한 경계 및 지령방법에 관한 사항 · 지령업무 경비원과 현장대처 경비원과의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불심자의 발견 기타 현장에 있어서의 사실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신임경비원의 기본교육 교과내용은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용역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에 있어서의 경찰기관에의 연락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용구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교육은 민간경비 분야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즉 상주경비, 교통, 운반, 경호, 기계경비의 분야별로 각기 다른 내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표준절차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민간경비원의 직업교육과 훈련분야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Security Training Academy,

Training College 등의 훈련조직에 의하여 교육훈련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시큐리티 아카데미는 행정실, 강의실, 식당, 실습실, 사격장 등의 시설이 있고 한 개의 강의실당 12명 정도의 교육생이 수업을 받으며 전문교관은 5~10명 정도로 담당별로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12명 정도의 인원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일방적 강의위주의 수업보다 수업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훈련조직은 주어진 훈련시간과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부하고, 관련된 기록 및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훈련조직의 교육훈련 시간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Western Australia 및 Queensland의 예를 들기로 한다(이상원, 2005, pp. 104-105).

<표2-3>와 같이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시간은 민간경비 자격분야(시큐리티 서비스, 접근시큐리티 서비스)와 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교육훈련 시간은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Western Australia주에서는 경비2급의 경우에는 최소 교육훈련시간이 94시간이며 훈련내용에 따라 182시간 내에서 유동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Queensland주에서는 최소 교육훈련시간이 80시간으로 되어 있다. 훈련내용은 재산과 부동산의 경비유지, 재산의 안전유지, 현장에서의 통신, 갈등관리,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업무수행관리, 기본민간경비 장비운용, 귀중품운반과 에스코트, 사람에 대한 안전제공, 군중관리, 고객과 효과적 관계유지, 팀활동, 응급처치, 법률과 절차의 이해와 설명, 취객관리, 고객편의제공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경비3급의 경우 Western Australia주는 최소 훈련시간이 126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부분과 선택부분 25과목 중 10과목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

Western Australia 주의 교육훈련 시간은 기술적 접근관리2급의 경우에는 최소 훈련시간이 134시간이며 기술적접근관리3급의 경우에는 304시간, 기술적접근관리4급은 456시간으로 급수가 높아질수록 최소 훈련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접근관리 2급은 최소 훈련시간이 80시간, 접근관리3급은 최소 훈련시간 190시간, 접근관리4급은 최소 훈련시간 345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호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시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심도있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Western Australia 및 Queensland의 민간경비 훈련시간 및 내용

	분야	시간	내용
시큐리티 서비스 (경비, 실내통제 모니터링)	시큐리티2급(경비)	94-182	재산과 부동산의 경비유지, 재산의 안전유지, 현장에서의 통신, 갈등관리,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업무수행 관리, 기본민간경비 장비운용, 귀중품 운반과 에스코트, 사람에 대한 안전제공, 군중관리, 고객과 효과적 관계유지, 팀활동, 응급처치, 법률과 절차의 이해와 설명, 취객관리, 고객편의 제공
	시큐리티3급(경비)	126-268	필수: 현장에서의 통신, 갈등관리,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업무수행 관리, 기초장비운영, 고객과의 효과적 관계유지, 팀활동, 법률과 절차의 이해 선택: 건물과 부동산 경비유지, 출입구 접근통제, 건물과 직원의 안전유지, 체포된 범죄자, 화물과 사람의 검색, 호위 및 귀중품호송, 사람에 대한 안전제공, 군중통제, 호송동인의 경비유지, 봉과 수갑사용, 소규모 팀지휘, 개선된 민간경비 장비사용법, 상황실의 현장직원활동감시, 민간경비 장비운용, 민간경비 순찰경관리법, 비상응급처치, 사람의 관찰과 감시, 직장에서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관리, 건물철거계획과 행동, VIP에 대한 안전제공, 상점과 정보보호,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수집, 법정에서 증거제출, 솔객관리, 시설물 분실 및 회수
	시큐리티3급(실내통제)	88-162	필수: 현장에서의 통신, 갈등관리,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업무수행 관리, 기초장비 운영, 고객과의 효과적 관계유지, 팀워크, 개선된 민간경비 장비사용법, 상황실의 현장직원활동 감시 선택: 건물과 부동산 경비유지, 건물로부터 출입구 접근통제, 직원과 건물의 안전유지, 소규모 팀지휘, 중앙통신실 및 모니터링실 운영, 비상응급처치, 사람의 관찰과 감시, 직업적 건강과 안전관리, 법률과 절차의 이해, 건물철거 계획과 행동, 상점과 정보보호
	시큐리티4급(실내통제)	110-168	
	시큐리티1급(판매지원)	50-70	
	시큐리티2급(기술적 접근:Technical Access))	134-170	필수: 케이블 설치와 케이블 지원시스템, 민간경비 장비설치, 고객문의에 응답 선택: 민간경비 평가책임, 민간경비 시스템 구성과 분류, CCTV시스템설치, 기계적 잠금시스템설치, 감시장치설치, 감시절차 실행
	시큐리티3급(기술적 접근)	304-392	
	시큐리티4급(기술적 접근)	456-610	
	시큐리티2급(접근관리: Access Management)	80-100	
접근 시큐리티 서비스 (기술적 접근과 관리)	시큐리티3급(접근관리)	190-255	
	시큐리티4급(접근관리)	345-465	
	시큐리티 디플로마	630-635	

주 : 표에 제시된 훈련 시간은 Western Australia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이상원, 2005, pp. 104-110
재정리).

III.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1.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경비원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은 경비업자와 경비원 양자 모두에게 존재한다. 경비업자는 시간과 예산상의 경비절약을 위하여 번거로운 교육을 구태여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들은 대부분 저학력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공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당히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여 사전교육에 대하여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박수래, 2005, pp. 46-47).

이와 같이 교육훈련에 대하여 경비업자나 경비원 모두 낮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산업의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장래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것이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일반경비원이 대부분 노령이고, 맞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비업계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없다. 교육의 강화는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경비업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육훈련기관 선정의 일관성 결여

현행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는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은 2005년까지는 경비협회에서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교육 훈련기관이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였다⁶⁾. 그 결과 신임교육은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가 있었다. 즉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

6)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구 경비업법 시행규칙 12조 ②

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 것이다⁷⁾. 또한 법령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 경비업법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경비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법시행규칙의 개정은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경비업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경찰청은 2005년 12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을 선정, 발표하였다. 신임교육기관은 경비협회와 에스원(천안연수원)을 포함하여 전국 47개소로 서울 12개소, 경기 10개소, 인천 1개소, 충북 2개소, 충남 4개소, 강원 4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3개소, 경북 4개소, 경남 2개소 제주 1개소가 지정되었다.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1차 강의실, 사무실, 강사기준, 기타 교육생을 위한 급수시설, 휴게실, 화장실 시설이 대상이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세부평가 기준 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선정에 있어 교육수요·지역·교육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와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재평가하여 신임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최용렬, 2006, pp.17-22). <표 3-1>는 지역별 민간경비교육기관 수와 2006년 2월부터 8월 동안의 이수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민간경비 교육기관 및 이수자 현황(2006년 2월 -8월)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12	1	2	1	10	4	2	4	2	3	4	2	1	47
인원	7,747	803	790	348	5,235	159	311	1,442	460	564	486	423	107	18,875

주: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통계연보」(2006), pp. 112-113 재구성.

7)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유권해석: 한국경호경비학회 다음 까페
<http://cafe.daum.net/security96>

전체 인원으로 볼 때, 교육훈련기관 한 개소에서는 400여명 정도의 배정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개월 간 서울의 경우는 개소 당 645명, 부산 803명 대구 395명, 인천, 348명 경기 520명, 강원 40명, 충북 155명, 전북 230명, 전남 155명, 경북 120명, 경남 210명, 제주 10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7개월간 교육실적이 5회 미만에 그친 교육기관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비협회를 비롯한 4개의 교육기관은 20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가지고 있어 지역 내 교육기관의 편중현상 역시 심각하다는 점이다(최응렬, 2006, p. 20). 따라서 지역별, 기관별 수요를 적정히 파악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3. 교과과정의 한계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 시간과 내용의 구성은 경비업법시행규칙 개정 전인 2005년과 개정 후인 2006년을 비교하여 볼 때, <표 3-2>와 같다.

<표 3-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구분	2005년 이전		2006년 2월 이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학과) (이론)	형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 체포 포함)	2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4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3
	소개	4	소개	7
실무	시설방호	2	테러 대응요령	3
	불심검문요령	2	화재대처법	2
	소방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기타	소개	6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 포함)	3
	입교식·평가·수료식 등	3		18
계		15	입교식·평가·수료식 등	3
				28

주: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2005년까지는 학과교육으로서 헌법 및 형사법과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이 있었고, 실무교육으로서 시설방호·불심검문요령·소방 등이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무술교육으로서 기본훈련 및 호신술 등을 배우며,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에 걸쳐 총 15시간이 배정되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 적용될 신임교육의 과목편성을 보면, 이론교육으로 경비원에

게 어려우면서도 적합하지 않은 헌법과 형사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범죄 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으로 현실성 있게 개선되었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론교육에 배정된 4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되었다. 실무교육도 시설방호·불신검문요령·소방 등의 과목을 6시간 교육하는 커리큘럼에서 테러대응요령 및 화재대처, 응급처치, 체포, 질문·검색요령 등 시대에 맞추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가미하여 18시간으로 배정됨으로써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무교육으로 배정한 인권교육은 인간의 권리 및 경비원의 자세나 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교육은 이론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또한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 경비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경비원 교육훈련에서는 이러한 모든 분야의 기초적인 부분은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개정안에는 호송경비업무나 기계경비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교수요원의 전문성 결여

경찰청 공고 제2005-28호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과목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교육과목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체포·호신술 과목은 사범급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경력이나 경험에 있어 연관성이 결여된 강사를 초빙하는 기관이 있어 문제가 있다(최웅렬, 2006, p. 19). 즉 교수요원의 자질과 자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전문교육기관의 제한

일반신임경비원 교육훈련은 경비업체가 한국경비협회에 신임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해 오다가 경찰청의 정책변화로 47개의 민간경비지정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큐리티 교육기관의 개방화의 흐름에 의해 문호가 열린 것이지만 전문교육 기관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교육기관 역시 형식적 시설 및 강사기준만 충족시킬 뿐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서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이상원, 2006, p. 24).

실례로 전국 20개 민간경비지정교육기관의 교육장 및 교육장비·기자재 구비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체포·호신술을 실습할 수 있는 전용실습장을 구비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의실에 매트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실습보다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화기 외의 화재대처법을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최웅렬, 2006, p. 25).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육훈련은 경비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직무의 능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본인의 발전과 경비업무의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경비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교육훈련은 조직의 의무보다는 조직이 당연히 힘써야 할 투자라는 인식이 부각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로 선택의 폭을 넓혀 높은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기존의 교육은 형식적이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교육훈련이 개선되고 교육훈련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교육훈련의 부정적 인식은 사라질 것이다. 경비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하고 생산성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경비업무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신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비원 교육훈련은 단순한 지식과 기법이 전달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평생직업으로 수요자를 위한 신성한 업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호의적인 마인드 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것이다(권태일, 2004, pp. 68-69).

이렇듯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바람직한 교육훈련 제도와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례로 박동균과 배철효(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경비원의 신임교육훈련과목과 경비업무와의 관련성이 많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5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임교육훈련과목과 경비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직

무수행 능력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동균, 배철효, 2006, p. 106).

이렇듯 조사에서도 교육훈련으로 인한 능력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경비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간경비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교육기관의 중간평가와 재지정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성과가 없는 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교육인원이 많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의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수요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수를 조정 혹은 재편성하여 교육수요가 없거나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기관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 정도 운영을 한 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최웅렬, 2006, pp. 27-28). 즉 일종의 중간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선으로 인하여 현실성 있게 교과과정이 개편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우선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이론교육이 기존의 4시간에서 현행 7시간으로 실무교육이 기존의 8시간에서 현행 18시간으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교육으로 배정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경우는 오히려 이론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론교육으로 재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목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무장 민간경비원에 대하여 회사방침, 회사와 시큐리티 부서의 정책, 조직, 절차 및 각부서의 운영과 활동, 법규와 그 배경, 보고서 작성, 징계, 일반적 규정, 특수규정, 응급처치, 자기방어, 통행 및 신원확인 시스템, 물품과 차량수색기법, 통신전자, 관찰기법, 장비운용, 순찰기법, 직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전문적 표준(윤리) 등을 16시간 배정한다. 그 후 전문분야별로 교육이 실시된다. 일본의 경우도 역시 기본교육으로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용역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시에 있어서의 경찰기관에의 연락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용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15시간 학습한 후 분야별 교육이 15시간 실시되고 있다. 호주 역시 분야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은 비록 일반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에 맞추어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즉 입교식, 수료식, 평가에 할당된 3시간을 제외하면 일괄적으로 25시간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교육훈련만으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기본교육과 업무별교육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25시간의 교육을 재편성하여 적정시간을 경비관련법 중 경비원에 필요한 부분,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 직무윤리 및 인권과 관련된 부분, 응급처치 및 화재대처, 보고서 작성요령, 호신술과 같은 내용은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으로 배정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및 처우개선

바람직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훈련기기나 장비 뿐 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수요원의 확충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과목과 전공영역이 다른 교수요원으로 교육훈련을 한다면 그 효과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요원의 처우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경찰청이 마련한 민간경비교육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에 합당한 관리와 처우를 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사위촉계약서 작성 시 교육기간, 보수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최웅렬, 2006, pp. 27-28).

5.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수요자에게 안전이라는 상품을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이 없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인 전문교육훈련이 어렵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은 범죄예방에 대해 원활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고도로 훈련된 경비원에게서 안전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박동균과 배철효(2006)의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 사례조사에서도 경비원의 전문교육 훈련 향상을 위해서 경찰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51%로 나타나 전문적인 경비원 교육훈련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박동균, 배철효, 2006, p. 107).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 전반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최근 민간경비관련 학과가 대학에 많이 개설되고, 관련 학회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민간경비의 학문적 성장과 더불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즉 1995년 한국 최초로 민간경비 관련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후 2006년 12월 말까지 무려 60여개의 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의 학문적 정립의 기회와 장이 마련되어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영역의 설정이나 풍부한 연구 실적과 성과가 없이 양적 팽창만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되는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달리 운영함으로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공배완, 2006, pp. 56-57).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들을 배출하며 대학과 관련 연구소가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 결 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국민들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민간경비는 급속히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인 성장이며,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비록 2006년 2월 경비업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민간경비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비업자의 자체 교육에서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지역·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시범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호송경비업무나 기계경비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등의 예를 참조하여 경비업무별로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민간경비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경비원들에게 제공된다면, 양적인 성장 뿐 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발전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국민의 민간경비수요를 더욱 확보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보다 향상된 처우개선을 담보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2의 경찰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ds/globalpoliceView.do?idx=23975&cPage=23%20\(외국경찰%20동향\)](http://www.police.go.kr/pds/globalpoliceView.do?idx=23975&cPage=23%20(외국경찰%20동향)), 2006년 12월 15일 검색
- 경찰청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2_07.jsp, 2006년 12월 15일 검색
- 경찰통계연보, 2006, 서울:경찰청.
- 「경비업법」(개정 2005.8.4, 법률 제7671호).
- 「경비업법 시행령」(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 공배완, 2006,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 51-72.
- 권태일, 2004,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원.
- 김순열, 2001, “민간경비업체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11:71-107.
- 김창호, 박준석, 이영석, 2005, “민간경호·경비원교육훈련의 개선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92:601-608.
- 박동균, 배철효, 2006,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의 사례분석과 함의”, 제9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수래, 2005, 「생활안전관련 민간경비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대학원.
- 윤종일 외, 1996, “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상원, 2006,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7: 1-34.
- _____, 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89-131.
- 이상철·이강문, 2004, “한국 민간경비원 경호무도교육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대한무도학회지 6(1):89-109.
- 이윤근, 1996,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5:33-56.
- 최웅렬, 2006,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학술세미나, 9-30.

- Robert D. Mccrie(2001). *Security operations management*, MA: Butterworth - Heinemann.
- Philip P. Purpura, CPP(2002). *Security and loss prevention*, MA:Elsevier Science.
- J.B. Hylton(1998). *Is Security Training Getting Short in Schools?* Security Management 4: 102.
- L. Thornburg(1998, 1). *Investment in Trining Technology Yields Good Result*, HR Magazine:15.
- I.L.Goldstein(1998). *Training and Development on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A:Jossey-Bass Publishers.
- M.Adams(1999,2). *Training Employees as Partners*, HR Magazine:65-70.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Huh Koung Mi, Park Young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public security demand, the private companies advanced continuously every year. However the size of the industry expanded in its quantity, the quality remains the same as before. So it's important to training of the security officers.

This study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rain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review of problems of training and education security officers. To develop our private security industry, we suggest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the training is important, the recognition against security officers training is low, so the improvement is demanded.

Second, When selec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t does not reflect the demand and a situation of education enough. So there is necessary that selec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gain, after finishing a demonstration duration.

Third, The education contents is general, so there is a necessity of the education which is professionalized.

Forth,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lecturer, we must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of the lecturer.

Fifth,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industry, we must found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Key Word: public security, security officers, security officer training system,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